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7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제7호의3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보다 간결하고, 교육의 목적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” 을 “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” 으로 정비함(안 제8조제7호의3).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7호의3의 “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”을
“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7의2. (생 략)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div>	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7의3. <u>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</u> 8.·9. (현행과 같음)	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의2. (개정안과 같음) 7의3. <u>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</u> 8.·9. (개정안과 같음)
8.·9. (생 략)	8.·9. (현행과 같음)	8.·9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7의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8.·9. (생 략)</p>	<p>제8조(경영 및 창업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의3.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</u></p> 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